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9. 15.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9. 9. 15.)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신 귀 철

가. 개정이유

마포구 생활권역내의 정보통신기반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써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o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 정보화, 지역 정보화"등 11종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함 (안 제2조)

o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1)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가)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나) 각 부문별 정보화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다)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라)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마)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

2)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가)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써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o 정보화 촉진 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4조)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촉진 시책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

2)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은 아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가)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업무관련 공무원

나) 지역내 연구기관·기업체·대학·언론기관·금융기관 등 지역정보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정보업무종사자

4)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o 지역정보화 본부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1)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정보화 본부는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설치 전까지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구의 업무 담당 부서가 지역정보화 본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o 전산정보자료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1) 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함.

2)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토록 함.

○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촉진토록 함.

2)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도록 함.

3)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강구토록 함.

○ 컴퓨터시스템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함.

2)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 관할구역내의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위탁할 업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등의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에 대한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8조 내지 제31조)

○ 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조례안은 '99. 1. 21일 법률 제5669호로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의 정보통신 기반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써비스를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마포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역 정보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o 동조례안은 제9장 36조로 조문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부서인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장에는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산정보자료의 활용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9장에는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등, 마포구 지역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동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조례입법형식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안 제3조에 규정된 마포구청장의 약칭표현에 대한 정의규정은 안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것이 조문배열상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4조의 조문내용은 조문의 자구표현상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9. 15. 조 영 천 위원외 1

나. 수정이유 : 일부 조문중 조례입법 형식 및 자구표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o 구청장을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수정함. (안 제2조제5항)

o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수정함. (안 제3조)

o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함. (안 제14조)

7. 심사결과 : 수 정 (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 정 (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5.
제 안 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중 조례입법 형식 및 자구표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구청장" 을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수정함. (안 제2조제5항)

○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구청장" 으로 수정함. (안 제3조)

○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으로 수정함. (안 제14조)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항중 "구청장"을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안 제3조중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14조중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4. 생략 5."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구청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원안과같음 1. - 4. 원안과같음 5. ---------- ---------- ----------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 ---------- ----------.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 ----------.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마포구생활권역내의 정보통신기반조성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써비스의 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 정보화, 지역 정보화"등 11종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조)

나.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1)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가)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나)각 부문별 정보화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다)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라)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마)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

(2)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가)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써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을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등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다.정보화 촉진 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4조)

(1)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함

(2)협의회 위원은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함

(3)위원은 아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함

가)구 소속4급이상 공무원 및 업무관련 공무원

나)지역내 연구기관·기업체·대학·언론기관·금융기관등 지역정보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정보업무종사자

(4)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지역정보화 본부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한 실무기구인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정보화 본부는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설치전까지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구의 업무 담당부서가 지역정보화 본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마.전산정보자료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1)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함

(2)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토록함

바.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이 확보되도록하고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촉진토록함

(2)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도록 함

(3)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강구토록함

사.컴퓨터시스템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등 도입의 타당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함

(2)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 관할구역내의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위탁할 업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등의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에 대한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

하여 규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1조)

자.정보화마인드 확산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위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5조)

3. 제정근거

가. 정보화촉진기본법(1999.1.21 법률제5669호)

나.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1999. 3.15 조례 제3565호)

4. 조 례 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4.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구청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6.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구의 단위업무 담당관·과를 말한다.

8. **"정보화자료"**라 함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CD-ROM 등 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다.

9. **"업무정보화"**라 함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10.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5. 구 정보화 기반조성

제2장 정보화의 촉진

제4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마포구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0. 주전산기 활용 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한 마포구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촉진협의회

제7조(설치)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업무관련 공무원
2. 지역내 연구기관·기업체·대학·언론기관·금융기관 등 지역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4.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기) ①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5조(설치) ①구청장은 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지역정보화본부(이하 "지역정보화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전까지 정보화를 총괄하는 구의 업무담당부서가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기타 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제17조(시설장비) ①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각호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 및 이용

제18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보존기간·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 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1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①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3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 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구청장은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1의 정보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유지보수) ①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28조(보안관리) ①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구청장은 구 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설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장 정보화교육

제32조(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구청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시설 · 장비확보) 구

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 등 관련 시설 · 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정보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제26조 제3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기 계 사용료	렌탈, 리스	월당금액×기기사용시간÷월평균기기가동시간
	구 매	구매가격÷5÷12×기기사용시간÷월평균가동시간
인 건 비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10호봉 월평균보수÷30×작업일수
소 모 품 비		실 비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10%
여 비, 기 타		실 비

주)

1. 기기사용시간 = 컴퓨터가 해당업무를 수행한 시간
2. 월평균 기기가동시간 = 해당 전산기기의 전년도 월평균 가동시간
3. 월평균 보수 = 기본급+장기근속수당+전산수당+
   기말수당월평균액+ 정근수당월평균액
4. 인건비
   -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10호봉 월평균 보수
5. 기계사용료
   - 임대(렌탈), 리스의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전 사용시 구매가격은
     『최초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으로 함